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 
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09. 5. 15.  
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4월 29일
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9년 5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9. 5. 13 제280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 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이장길 기획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 
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일·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 
지급액을 근무1회당 5만원으로 정함 (안 제3조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#### 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당직근무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근무수당을 현행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, 타 시·도교육청 및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《참 고 자 료》

- 타 시·도교육청 당직비 지급 현황
  - 50,000원 : 6개 교육청(부산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경북)
  - 40,000원 : 4개 교육청(서울, 대구, 전남, 경남)
  - 30,000원 : 5개 교육청(인천, 강원, 충남, 전북, 제주)
  - ※ 인천, 제주교육청은 2009년도 중에 50,000원으로 인상 검토 중
- 시·도 자치 단체
  - 14개 시·도 : 평일, 휴일 각 50,000원
    - 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남, 충북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
    - 충청북도는 「충청북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」를 개정 (2009. 4. 3. 조례 제 3136호)하여 근무 1회당 5만원 지급
  - 대구, 제주 : 평일 30,000원, 휴일 40,000원
- 청주시, 청원군
  - 청주시 : 평일, 휴일 각 50,000원
  - 청원군 : 평일 숙직 30,000원, 휴일 숙직 및 일직 50,000원

###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당직수당 지급) 일·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 
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당직수당 지급)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회당 30,000원을 지급한다.	제3조(당직수당 지급) 일·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5만원으로 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9420호, 2009.2.6)

제59조 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 
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